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379

제출년월일 : 1994. 9. 20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- 금왕읍 지역주민의 종합문화센터로서 지식·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왕도서관을 설치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별표 1 중 음성도서관란 다음에 금왕도서관란을 신설함.
- ※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토지에 음성군이 건물을 신축(내부시설 및 도서 포함)한 후 동 건물을 기부채납하여 금왕도서관을 설치함.

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(교육기관의 설치)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등)

□ 조 례 안 : 덧붙임

□ 참고자료 : 덧붙임
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금왕도서관 설립계획(안)
- 금왕도서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(교육부)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
- 관계법령 발췌서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중 음성도서관란 다음에 금왕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금 왕 도 서 관	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